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11. 26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지원사업(안 제5조)
- 진단검사(안 제6조)
- 교사연수(안 제7조)
- 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에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음.
- 안 제6조에는 난독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안 제7조에서는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